

『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』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4. 18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1. 공시공달 대상 업체 및 현황 : [붙임1] 참조
- 2. 공고기간 : 2024. 4. 18. ~ 5. 2.
- 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4. 공고내용

처분사항	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
당사자	임*진[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영남탑스빌 ***동 ****호]
위반내용	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
처분종류	과태료 250,000원(1/2 감경분) 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0,000원
처분근거	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100조 제2호 「건설산업기본법」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
의견제출기한	2024 .4. 30.
문 의 처	서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(☎ 560-4484)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